서울특별시 궁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서

의안번호 2837

2021. 11. 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이병도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1.1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공정경제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정경제위원회를 개별 운영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공정경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 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마.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 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사. 가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 아. 위원의 제착·기피·회피·위촉해제·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
- 자.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개정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위원회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정 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 배경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2021.3.25.) 되면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에 의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 대신하게 되었음.
-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생협력,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 장애요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왔으며, 최초 구성(2016.9.30.)이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음.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 성과 >

- ㅇ 설치목적 :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사항 심의
- 구 성 : 총 18명(최초 구성 : 2016.9.30., 현재 위원 임기만료(2020.10)로 미운영)
- ㅇ 주요기능
- 경제민주화정책 과제 발굴
-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을 위해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경제민주화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협약체결
- 운영실적 : 총 49회 개최(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44회)
- 존속기한 : 2021.12.31.
- ㅇ 주요성과
-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추진(2016.2.)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제로페이 도입 등
- 가맹·대리점 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등
- 노동이사제 도입 및 생활임금제 확산 등
- 그러나 경제민주화 핵심가치인 상생, 공정, 노동 분야의 개별 조례가 각각 제정되면서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020.10.1.)된 이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사실상 운영이 종료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해 공정경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서울시 공정 경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다. 공정경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차이점

 신설된 공정경제위원회와 현행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주요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공정경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비교 >

구분	공정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위원회		
기능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자문 및 심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 가에 관한 사항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공정경제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구간 정책협의를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자치구의 건의에 의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위 원 수	15명 이내	20명 이내		
위 원 장	1명(호선된 민간인 위원)	2명(행정1부시장, 호선된 민간인 위원)		
부위원장	호선된 민간인 위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당연작위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노동· 공정·상생정책관		

간 사	공정경제 관련 담당관 또는 과장	별도 규정없음		
존속기한	2026.12.31.	2021.12.31.		
위원자격	- 공정경제 및 민생 분야 시민단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재정·경제 분야 전·현직 시의원 - 공정경제 관련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정경제 및 민생 분야 정부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 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산업·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그 밖에 위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경제·민생분야 시민단체 경력1년 이상인 사람 재정·경제 분야 전현직 시의원 경제민주화 관련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제·민생분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위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공정경제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 없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반면,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포괄적인 심의를 위해 20명의 위원이 전체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상생분야, 공정분야, 노동분야)를 구성하여 활동했음.

< 분야별 조례 및 관련 위원회 현황 >

분야	관련 조례	관련 위원회		
상생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2021.3.) 서울시 서울시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12.)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2016.1.)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2010.1.) 	희망경제위원회(풀뿌리특위)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상가건물임대치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공정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2021.3.)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2.11.1.)	공정경제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공정무역위원회		
노동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2021.3.)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1.)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2020.1.) 서울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2016.1.)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2015.1.)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2014.3.)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지문위원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 또한, 공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되나(안 제12조제2항·제3항), 경제민주화위원회는 행정1부시장과 민간인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부위원장이 됨.
 - 이처럼 민·관 공동위원장 대신에 민간위원이 단독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면 심의사항 의결시 원활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행정1부시장을 대신해 공정 경제 분야의 최고관리자인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당연직 위원 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한편, 위원의 자격에 '산업・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산업현장의 의견이 공정경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2조제3항제3호).
- 이 밖에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정경제 관련 업무의 담당관 이나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을 신설했음(안 제16조).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독립적・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공정경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을 도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제민주화위원회 존속여부와 공정경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후 8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37 발 의 년 펄 월 · 20 발 의 자 : o`

발 의 년 월 일 :2021년 10월 15일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공정경 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정경제위원회를 개별 운영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공정경 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 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마.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 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사.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
- 자.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2 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공정경제 관련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1. 공정경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산업·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 4.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공정경제· 민생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5. 재정·경제 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 6.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제1호, 제2호,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공정경제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	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		
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u>심의</u> 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u>자문</u>		
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	<u>및 심의</u> 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	<u>〈삭 제〉</u>		
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6			
조의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대신한다.			
<u>〈신 설〉</u>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		
	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u>〈신 설〉</u>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		
	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		
	<u>다.</u>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u> 정한다.</u>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공정경		
	제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		

현 행	개 정 안		
	이 된다.		
	1. 공정경제 관련 전문지식을 갖		
	춘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		
	<u> 직한 사람</u>		
	2.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제2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산업·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		
	서 1년 이상 산업·경제에 관한 조		
	사·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		
	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공정경		
	제·민생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		

현 행	개 정 안		
	은 사람		
	5. 재정·경제 분야에서 서울특별		
	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		
	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		
	는 자로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u>의원</u>		
	6.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u>으로 시장이 제1호, 제2호, 제4</u>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u> 〈신 설〉</u>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		
	<u>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u>		
	<u>l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u>		
	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u> </u>	<u>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u>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현 행		개 정 안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신 설〉</u>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
		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
		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u>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u>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
		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

현 행	개 정 안		
	<u>다.</u>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		
	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		
	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		
	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u>〈신 설〉</u>	제16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경제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		
	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u>〈신 설〉</u>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		
	<u>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자</u>		
	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		
	<u>으로 본다.</u>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		
	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		

현 행	개 정 안		
	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		
	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		
	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u>아니하여야 한다.</u>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		
	<u>지 아니할 경우</u>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		
	<u>다.</u>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u>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u>		
	되지 아니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u>〈신 설〉</u>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	제19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
정경제 정책의 실행을 위해 관계	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	
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실태조	<u>제20조</u> (예산지원) (현행과 같음)
사,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	
정협의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제2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u>/ 개21구</u> (/기정비계/(현행세 /E 현/
다.	
· ·	

문서 번호

2021101200000068

미첨부사유서(1호)

요 청 인 : 이병도 의원 담당: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 수 일: 2021.10.12

회 신 일 : 2021.10.13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 1. 비용발생 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3. 미첚부 사유
-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1항에서 공정경제위 원회의 기능을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으나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하여 개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운영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공정경제위원회(제11조제1항) 운영비용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28,500천원(연평균 5,700천원)
- 추계의 전제
 - 공정경제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15명으로 하고, 위원 중 서울시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외부위원 12명으로 하며, 위원회의 개최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85.500천원

(단위 : 천원)

7	연도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세입	_	_	_	_	_	_	_
^ 自	소계(a)	_	-	_	_	_	_
	_	_	_	_	_	_	_
세출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1조)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소계(b)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Ž	동비용(b-a)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 위원회 설치·운영비 ≒ 28,500천원

- $-5년간 위원회 설치·운영비 산출방식 <math>\sum_{i=1}^{5} ($ 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i ※ i=비용추계 연차 $(2022\sim2026)$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용 = 5,700천원
 -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업무추진경비
 - = (200천원 × 12명 × 2회) + (30천원 × 15명 × 2회)
 - = 4,800천원 + 900천원
 - = 5,700천원
 - ※ 회의참석 수당은 2시간 이상 진행: 1인당 20만원 적용(시 공무원 및 시의원 지급제외)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020.7.) 참조)
 - ※ 업무추진비 단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 1]에 따라 3만원으로 책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석관(주무 관)

© 02-2180-7952

e-mail: ehdus0@seoul.go.kr